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858

발의연월일: 2023. 2. 7.

발 의 자:이형석·양향자·민형배

박성준 • 송갑석 • 이용빈

조오섭 · 서삼석 · 이성만

윤영덕 • 이학영 • 백혜련

김태년 · 이병훈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,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 려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·범죄예방을 도 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음.

이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

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
	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
	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촬영
	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